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년 2월 16일  
행정재경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2월 2일, 고성미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2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4년 2월 1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2.4.26. 제정, '23.4.2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경비 지원·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 지도 및 점검·환수·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 나.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비 지원 및 지도·감독 등 관내 방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근거로 2016. 1. 5부터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2021년 10월 기준 전국 약 10만 442명, 4,225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하지만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관리 및 방범 활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2. 4. 2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1) 및 제3조 제2항2)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임.
-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가 경비를 지원 받기 위

1)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는 경비 지원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바, 안 제7조에서 지원금 정산서 및 방법 활동 순찰일지를 순찰 활동 등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집행부에서는 제출 서류가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이 확인하여 부적절한 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 지원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서 역할을 구분하고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 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